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9. 29.(목)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9차, 제5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9월 22일에 있었던 제5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주)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 (2016-55-20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문화방송의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하되,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문화방송이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안과 관련하여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 방송법 제91조의7에 의거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하되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 7월 15일 (주)문화방송에서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게 재송신 계약 촉구 및 과거 정산누락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6년 7월 28일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측은 재송신 대가 인상에 대한 근거와 계약조건 제시를 요청하는 동시에 가입자 수 누락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16년 8월 5일, 19일 (주)문화방송은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게 정산 관련 가입자 자료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년 9월 9일 (주)문화방송 측은 상세 가입자 정보를 9월 13일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16년 10월 4일에 지상파 신호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13일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측은 계약서의 가입자 규정에 따라 가입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해 왔고, ‘14년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주)문화방송에서 재송신 계약서에

가입자 수 규정은 단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상세 가입자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16년 10월 4일에 지상파 신호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방금 경과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방송법 제91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문화방송이 동시재송신 채널이 아닌 채널의 '16년 10월 4일자 채널공급 중단을 2차례에 걸쳐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통보하였고, '16년 10월 4일에 만약 채널공급이 중단될 경우,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가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어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거 재송신 협상 이력을 감안하면 실제 방송 중단 여부는 중단 예정일에 임박하여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송 중단 예정일 직전까지 상황변화를 주시한 후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사안과 관련하여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적절한 시점에 위원장님께 보고 후 (주)문화방송에 대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주문에 '중단된 경우에는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주문에 '중단된 경우에는 며칠간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한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지·재개를 명한다면 며칠의 유지·재개를 명할 계획이십니까?

####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실제로 유지·재개 명령 효과의 첫 번째는 실제 방송이 되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 양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만약 명령을 발하게 된다면 법에서 규정한 30일 최대한으로 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주문에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하되', 이렇게 넣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면...

#### ○ 최성준 위원장

- 아니면 그 기간도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할 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것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만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일이라는 기간을 의결주문에 넣

어도 전혀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일단 법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기에서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한 기간 동안' 한다면지,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30일 이내 범위에서'라는 말을 굳이 넣지 않아도 의결주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방송정책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20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여지를 놔둔다면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적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30일 이내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시기를 10일로 하거나 20일로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입장에서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중단했을 때 특히 실시간 방송을 중단했을 경우 유지·재개 명령하는 것은 30일 이내에서 하고, 한 차례 30일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딱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지·재개 명령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유지를 하든 재개를 하지요,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다시 또 유지·재개 명령권이 발동되어서 유지·재개하다가 그 기간 도과한 다음에 또 중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낼 수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60일이 최대한이고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더 발령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20일이다, 이렇게 해서 단축해서 유지·재개 명령을 내릴 경우 사업자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법에 입법할 때 국회 심사소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제안한 것은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과 함께 재정제도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당사자 간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방송이 중단되거나 해서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조정권을 넣자는 것이 재정제도의 취지였는데, 거기에서 재정제도는 국회 토론 과정에서 빠졌고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만 규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입법된 뒤에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취지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화방송과 스카이라이프가 협상이 잘 안 돼서 방송이 중단되면 수도권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불편을 겪는 것인데 가입자가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2016년 3월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153만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153만 가구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가입자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전체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430만 가입자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430만, 그러면 3분의 1 가까이인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토론, 논의사항은 이 방송 유

지·재개 명령권을 언제 발동하느냐는 시점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유지·재개명령권인데 방송의 유지는 끊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재개는 중단된 뒤에 재개시키는 것입니다. 방송의 자율성도 있고 또 중단되지 않도록 할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책임도 있습니다.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겠지요. 그런데 10월 4일로 문화방송이 스카이라이프에 최후통첩을 한 날짜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10월 4일까지 문화방송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끊겠다는 통첩을 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종료하는 시점, 시각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았고, 10월 4일 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사 간의 협상 진행 중이고 일종의 최후통첩을 한 것인데 10월 4일이면 실제로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까지 앞서 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양자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고 협상 절차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MBC 쪽 입장은 10월 4일 날 끊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전략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을 중단할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화방송과 또 소통이 원활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의 전략, 속셈을 잘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예방 차원에서 유지 쪽에 쟁점을 두고 4일 최후통첩이 됐으면 10월 3일 자정을 기해서 이것을 발동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라도 실제로 방송중단이 이루어진 직후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단 문화방송 측이 방송을 중단한 직후에 한두 시간이라도 길면 하루라도 해서 영향을 받는 수도권의 시청자 153만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는 것인지, 또 여론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예방보다는 중단이 이루어진 직후에 방송 재개 명령에 초점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실제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의 발동을 위임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위임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시해서 위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며칠에 할 것이냐, 아까 고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법상 1차 30일 하고 그래도 협상이 성사가 안 되면 30일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길어봤자 60일인데 60일 넘기고 나서는 방통위에서 할 역할

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MBC 문화방송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방통위가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10월 4일 중단되기 전에 유지·재개 명령을 발동하면 중단되기 전인데 직권을 발동했다, 개입했다, 법상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MBC가 단순히 협상 차원에서 최후통첩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방송을 실제로 중단할 생각은 없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우습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시적으로 중단이 이루어진 직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올림픽경기 중계상황이라거나 월드컵 같은 국민 보편적 관심사항이라면 잠시라도 중단되는 것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통위가 직무를 소홀히 해서 잠시라도 방송중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결해 놓고 실제로 중단시키는지 지켜보면서 그 직후에 우리의 정책권을, 직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3페이지의 제91조의7 조항을 보면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재개 명령권은 어떻게 보면 방통위의 권한일 수도 있지만 시청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주문을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하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30일을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주 위원님께서 약간 다른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유지·재개 명령을 저희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1회밖에 사용할 수 없고 유지·재개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단순히 방송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또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그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조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일단 주어진 유지 명령기간을 다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방송정책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0일간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하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유지·재개를 명한다,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유지·재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유지·재개를 명하자고 했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청자들이 그렇게 중대한 프로그램, 꼭 봐야 할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몇 시간이나 하

루 정도는 방송이 중단되어도 크게 영향이 없고, 그 이후에 재개를 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방송정책국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무리 프로그램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중요한 방송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그것을 반드시 시청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황상 방송이 중단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중단이 되었다면 중단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게 재개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임박해서 곧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중단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는 것은 시청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한다고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통지가 10월 4일 날 중단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되어 있는데, 10월 4일 날 어느 시각에 중단할지 저희가 알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10월 4일에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저희가 ‘아, 이제는 진짜 중단이 되는구나’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까지는 저희가 유지명령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시각에 방송이 중단될 것이구나’라는 것이 확실시 되면 그 직전에 유지명령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시 되는 판단을 기다리다가 방송이 중단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지명령이 아니고 중단되는 그 순간에 바로 재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결주문이 그와 같은 2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재개라는 것을 병렬적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지명령이든 재개명령이든 하나만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겠습니다만 실제 현실상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재개를 같이 쓴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기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도 그 시기와 확실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의결하는 이 순간에는 불가능하고, 실제로 확실시 되었을 때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넣었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에 처음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법에는 방송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상황, 2가지를 상정해 놓았습니다. 중단된 경우에는 판단의 재량권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임박한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일 수 있습니다. 판단자의 주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사실상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취지인데 공공정책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상상력이지요. 이것이 진짜 중단될 것이냐,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방은 곤란합니다. 방송사 간의 협상자율권, 방송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떤 범죄가 예견된다고 해서 사정당국이 예비검속을 하는 것은 완전히 사정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예를 비교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민간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예방책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가시적으로 중단된 직후에 한두 시간이라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과 직권조정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시청자의 권익이 가시적으로 치유됐다는 상황을 보고, 개

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의 긴급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중대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방송채널이 얼마나 다원화, 다양화 되어 있습니까? 방송채널의 선택권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시적인 중단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라면, 중단된 다음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법에 방송의 유지명령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단되기 전에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명령권을 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상의 자율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다가 소위 당사자 사이에 협상의 최종적인 결렬을 서로 공표하고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으니, 앞으로 1시간 후에 중단하겠다는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유지명령을 할 것이지, 당사자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4일이 됐다고 해서 바로 유지명령을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 취지라면 좋습니다. 참고로 방송 중단에 임박해서 방송의 유지를 왜 넣었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보편적 관심행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두 시간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시청자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방 차원에서 유지를 미리 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시적인 중단상태의 재개 명령권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의견을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습니다. 오늘이 9월 29일이고, MBC가 지상파 신호공급을 중단하겠다고 21일 날 스카이라이프에 문서를 보냈을 때 이야기한 날짜가 10월 4일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아주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21일 날 문서로 이야기한 10월 4일 전에 전체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라서 그런 점도 고려되지 않았나 저 혼자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절하게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면 위원님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서 유지명령이나 재개명령을 이런 경우에 발동을 해야겠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 의견을 같이 한다면 언제 유지명령인지, 재개명령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사무처가 상황을 판단하고 위원장님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위임하자, 저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30일이 맞고 20일이 맞고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기간이든 사전 예방적인 조치의 유지든 사후적인 조치의 재개든 그런 것을 다 위임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유지·재개'의 뜻이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유지 또는 재개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글썄요, 의결주문이나 제안이나 그 뒤 4페이지에 계속 '유지·재개', '유지·재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유지명령, 이것이 제91조의7 법 문항 그대로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그 문구 앞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방송법 제91조의7조에 의거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한다, 이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유지를 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하되',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측면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의결할 내용 중에 방송의 유지를 하거나 또는 재개를 하는 기간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까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지명령의 기간은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해 놓고, 다만 유지·재개 명령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는, 다시 말하면 발령시기는 미리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구체적인 문구가 나가는 것, 그런 것만 저에게 위임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20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30일을 하든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오늘 의결할 때는 기간까지 같이 넣어서 의결하고, 다만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그 시기, 구체적인 문구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부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10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월 3일 자정 또는 10월 4일 어느 시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방송과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의 협상과정을 계속 지켜보다가 최후 결렬이 되고 '이제는 1시간 뒤에 방송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최후통첩이 갔을 때는 최후통첩이 간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방송이 끊어지도록 놔두는 것은 시청자 이익이 너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한해서 유지명령을 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협상내용도 잘 모르는데 저희가 서둘러서 유지명령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협상전략이라는 것이 끝

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을 끝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권의 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명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판단하느냐, 이것은 정말 정부로서는, 행정청으로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민간 영역의 자유권이 있는 것인데 행동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유지해라?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문화방송의 전략 기획 부서 정책담당에서 ‘우리는 이것을 협상전략으로 통보한 것이고 우리도 방송을 끝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재개명령권을 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유지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런 재량권을 정부가 행정청이 가져서도 곤란한 것 아니냐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또 이 법을 토의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오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다는 끊어졌을 때 재개명령을 하는 것이 최후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이고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래 법에는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의결주문에서 이것에 대해 ‘임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유지명령을 해서 계속 방송이 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사실 재개를 오늘 의결주문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시 되는 그 시기에 한해서 유지명령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확실시 되는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게 되면 그때는 바로 미리 의결해 놓은 것에 따라서 재개명령을 하겠다는 2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인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법이 만들어졌던 입법 정신이나 취지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단 1초도 블랙아웃,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나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바로 방송이 끊어진 직후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으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협상전략이 깔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보다가 그렇게 발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결주문에 이런 우리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어떤 시점에 이것을 발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판단까지도 위원장님께 위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입법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지·재개 명령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도 단호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법의 취지는 명령재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권 발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협상이 타결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마지노선으로 입법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업자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이익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끔 잘 협상 분위기를 만들고 양 당사자

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어, 방송 끊어졌어. 그래. 그럼 우리가 발동할게’ 이런 기계적인 행정 집행은 우리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간과해서는 안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만들어 내는 협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송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거래의 사적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관청에서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한다, 부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송의 자율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이것은 사업자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자로서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사적 영역이라는 점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입법정신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사업자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방송 유지·재개 발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 당사자 간 분쟁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주선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최종 순간까지도 발동을 미루고 그렇게 해서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MBC와 스카이라이프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KBS, SBS 다른 지상파들도 협상을 줄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례를 잘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해서 어떻게든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고삼석 상임위원

- 회의를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서는 의결주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첫째는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그런 순서로 논의해야 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러려고 했었는데….

####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이것은 긴급안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 논의를 최소한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보는 위원님들의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또 이견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나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긴급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이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사업자에 대해서 나를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으나 방송 중단을 수단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만약에 방송

중단이 실제 현실화되면 우리가 유지·재개 명령이라도 발동하겠다,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의아한 것이 이것이 과거의 VOD 협상하고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VOD는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방송법에 의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시간방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SBS와 스카이라이프가 수신료 문제로 한번 중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때는 사실 HD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SD는 송출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쪽에서 정확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MBC 쪽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수신료 배분과 관련된 협상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방송을 끊겠다는 통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신료 배분, 재원 배분 문제는 사적영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적영역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적인 수단인 실시간방송 그리고 그 뒤에는 시청자들 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볼권리를 가지고서 벼랑 끝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입장을 먼저 강력히 밝힙니다. 경과사항을 볼까요? 금년 7월 15일 공문을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보냈습니다. 그랬지요? 재송신 계약 조건 및 과거 정산 누락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 뒤로 두어 차례 서로 공문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공문을 통해서 금년 10월 4일에 이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지상파 신호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통보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전에 다른 과정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두 달 만에 협상이 결렬될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이 안 되면 지상파방송을 끊겠다,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상파들이 유료방송의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서 지상파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아무리 협상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방송중단을 수단으로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스카이라이프에서 가입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기준으로 재송신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MBC에서는 단자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단자 기준으로 재전송 수익 배분을 나누는 문제는 지난번 케이블TV 재판에서 결론이 났지요, 판결이 나왔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금년 1월자에 지상파와 씨앤앰 간의 소송이 있었고, 가입자 수 산정을 단자 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판결도 있습니다. 판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소급해서 단자 수 기준으로 재전송료 배분기준을 정하고, 재전송료를 지급하는 기간을 언제로 할 것인가, 또 그것의 소급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다른 사안보다는 이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 사업자들이 극단적으로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놓고서 이렇게 벼랑 끝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한 차례 논의할 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잔 고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은 단일 사안에 대해서 30일, 그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최장 60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다시 방송을 끊게 된다면 저희가 개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업자도 아니고 공영방송사업자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는 한때 공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자들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수습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단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의 입장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해결 안 된다면 우리들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자 이익을 앞세워서 이런 것들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역대 사안들에 비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제대로 협상도 안 해 보고 바로 방송을 끊겠다, 이런 전략을 갖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케이블TV 사례를 통해서 이미 재송신 대가 산정의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양 사업자들에게 시청자의 볼권리 가지고서 협박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시청자들의 걱정이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사업자들 사적 영역에 직권으로 개입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양 사업자가 철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작은 분쟁에 대해

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수가 적더라도 시청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방통위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아마 당사자 중에서 한 측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분쟁조정 신청이 이루어지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조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각각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방향은 다 맞는 것 같고 약간 시각의 차이, 이 사안을 보는 것에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슈가 완전히 사적 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에 왜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았느냐, 그런 취지를 봤을 때 이것은 100% 방송사 간 사적 자치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의결주문과 제안이유가 중복됩니다. 의결주문이 됐든 제안이유가 됐든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의거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하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위원장님께 위임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든 사후적으로 하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자구의 차이이긴 한데 의결주문과 제안이유와 제안이유 맨 뒤에 있는 자구를 그렇게 약간 다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방송과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사이의 재송신 계약은 당연히 사적인 계약이고 거기에는 계약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의 자유보장에도 나름대로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단순히 두 방송사업자 간의 계약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지상파방송사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사가 시청자의 이익을 문제시 되도록 하면서 협상의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에 최종적인 결정을 단자수로 하는 부분, 또 언제까지 소급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성실하게 협상을 해야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는 가입자 자료,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계약 당사자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는 양쪽 다 계약자유 원칙을 최대한 존중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법에서 그런 경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방송법 제91조의7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하는데 시청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자 하면 사실은 유지·재개 명령기간이 30일, 1회 연장 30일 해서 총 60일이면 부족

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 사이에 방송사업 간의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송정책국장도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어느 한쪽에서 방송분쟁 조정신청을 해 올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바로 이런 경우에 아주 적절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정안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권고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무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방송사업자들도 그것을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의결주문으로 돌아가면 의결주문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화방송의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0일 동안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하되 구체적인 시기 및 문구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위원님들 생각에 제가 부른 내용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좋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방송법 근거조항만 30일 동안 앞부분으로 하고요.

○ 최성준 위원장

- 30일 동안 앞으로 보낼까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구체적인 시기 및 명령내용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구체적인 시기 및 명령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 및 명령내용으로 하고 제 91조의7을 중단 예정일 앞쪽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구체적인 명령시기 및 내용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구체적인 명령시기 및 내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령시기 및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임박’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종 협상이 결렬되어서 사실상 중단이 확정된 그 시기에 방송을 유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시기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기인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근무시간 내에 도래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정리를 하셨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부르겠습니다. ‘(주)문화방송의 (주)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중단 예정일 또는 중단일로 부터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하되, 구체적인 명령의 시기 및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지금 수정한 것처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16-55-204)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사업법의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로써 지난 6월 10일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진행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용은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과징금 감경은 우리 위원회 고시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근거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사유 규정에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 보호 활동’ 2가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현행 사업법은 사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유통업자는 소규모 유통업자에 비해서 그 피해가 중대하고, 또 단말기유통법에도 사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법에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차등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1인 인터넷방송의 음란 선정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듯이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됨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더라도 현행법상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 그다음에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현행법에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10월 중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입법예고나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원래 6월 10일에 보고된 안과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예외인데 청소년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 몇 세 이하지요? 18세 이하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대체로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한다, 선택권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특성에도 관련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선택권을 보장받은 학부모와 청소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외 신청을 하는 케이스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극히 소수이겠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교육 현장도 중요한데 가령 학교의 한 클래스나 어느 한 동네에 이런 예외적으로 차단수단을 배제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혼자 보겠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특성은 또래문화입니다. 급우들과 동네 친구들과 나누어 볼 것입니다.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조치라는 것이 빛을 상실하지 않을까? 또 이 법의 취지가 크게 퇴색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 접촉, 전파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제도든지 예외적인 사항을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취지가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안은 전체적으로 지지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런 선택권을 신청해서 받은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리에 넣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발표할 때 홍보하고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라도 우리 아이가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 중 누가 예외적으로 선택권을 보장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보고 돌아다닌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외조항을 신청할 학부모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학부모가 자신의 교육권과 교육철학을 침해받겠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좋은 법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 새로운 법제를 발표할 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외 선택권을 부여받은 학부모는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아무래도 저희 국에서도 인터넷윤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미래부로부터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사업들도 다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문에 보면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서면신청으로 명확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서면으로 작성해서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시행령에 담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런 의사라면 법에 문안 자체에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확하게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이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제처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추가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만 그것을 어느 부모가 이런 신청을 해서 그것이 혹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유해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면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논의할 때 '서면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라는 것을 넣는 것이 또 그것이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그럴 리가 없다, 세상 어느 부모가 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음란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 교육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야말로 자가에서, 자기 집에서 이런 음란물을 접해서는 안 된다, 또는 차단하는 것을 굳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외조항을 뒤서 차단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을 갖고서 정말 정교하게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아이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각종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아예 없다거나 또는 자녀가 요즘처럼 무방비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것을 차단시켜서 우리 아이를 그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그냥 자기 자녀를 방치해 두고 내버려두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그것이 사건화 되어서 정말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부모가 PC방에 있어서 아이를 굶어죽게 한다든가 극단적인 이런 예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하는 부모의 교육권이 온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청할 때 차

단하는 것을 예외로 해 달라고 엄격하게 신청요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담아도 좋고 아예 법제화할 때 거기에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아무나 신청 못 하게, 왜냐하면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차단된 예외가 인정된 그 학생의 휴대폰을 통해서 음란물이 만약에 유포가 되고 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상상을 하기 힘든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금 많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우리 환경이지만 그래도 법제화는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제안합니다. 그런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정해서 피해가 이웃에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부모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부모의 판단 하에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부모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정책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인데 실제로 차단수단을 설치해도 차단수단을 해제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단수단이 해제가 되면 해당 이동통신사가 그 부모에게 이 차단수단이 해제됐다는 통지를 해 주고 있지요?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부모의 또 크게 패념치 않은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다시 또 차단수단이 설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차단수단 설치를 촘촘히 해 놓는 다한들 그것을 우회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워낙 그런 데 밝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것은 그 부모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터넷 윤리교육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로 나누어져 있다가 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맡아서 교육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소위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사회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부모, 자녀 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통한, 특히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법·제도상 허점이 생기는 부분들을 메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 또 지금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수단을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육에 신경을 써서 전체적인 사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과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더라도 얼마든지 우회해서 불법유해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화 하더라도 수위가 높은 일부 유해정보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는 것이지, 모든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대한 이용자,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심지어 우리가 모바일상에서 가장 많이 동영상 이용을 하는 글로벌기업의 앱 같은 경우도 청소년 성인인증 없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하드코어에 준하는 유해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번 점검해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연령제한도 풀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든 것들을 100% 다 점검하고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동영상 불법유해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글로벌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글로벌사업자들에 대해서, 제가 사업자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상에서 동영상 트래픽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외국에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끊임없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청소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을 해라, 이러한 경고를 계속 해 주라는 것이지요. 제 취지를 아실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동의의결제가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6월에 보고될 때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동의의결제가 사업자들의 규제 회피수단, 그리고 사업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외부에서 많은 의견을 쫓고....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저희 담당 과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러한 오해들이 많이 불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들이 확인하고 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시의 결정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동의의결 확정 이런 것들, 그리고 동의의결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동의의결제가 실질적으로 제재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권익 회복,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공정위 운영과정에서 보면 또 적지 않은 기간 실제 운영해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법을 도입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오히려 사업자 우호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그런 경우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제도로서는 상당히 완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동의의결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동의의결제의 운영은 바로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다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러한 것이 감안된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 상임위원 미방위에서도 일부 나온 의견입니다만 저희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서 과징금을 많은 액수를 부과해서 받았지만 그것은 국고로 귀속이 되고 이용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제도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의결제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그것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런 절차적인 것으로 저희가 다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또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월 6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5분 폐회 】